

제255회 정례회
2006. 12. 22(금)

심사보고서

□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산업경제위원회

심사 보고서

2006. 12. 22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6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6일

상정일자 :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- 2006. 12. 18 :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종록)

제안 이유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 · 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기업인 예우 확대와 기업사랑·농촌사랑 운동의 지원 근거를 정함(안 제4조 및 안 제13조)
- 기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“기업인의 날”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“충청북도기업애로 지원협의회” 지원기능을 강화하고,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함(안 제15조 및 안 제16조)
-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회의 운영근거를 정함(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신순섭)

-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·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날 지정, 기업애로센터 설치 및 기업애로 지원 옴부즈만 제도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5조의 충청북도 기업애로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

하고,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규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위원 위촉에 있어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실제 애로를 겪는 기업인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

- 안 제18조 기업애로지원 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은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설치에 관한 보편적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문문위원회와 기업애로 지원협의회에 대한 기능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.
- 다만, 본 조례는 일부분이 “할 수 있다”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감안할 때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 기 살리기 및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수정안 요지

수정 이유

-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을 기하여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“도 실 · 국장”을 “도 실 · 본부 · 국장”으로 한다.
- 안 제17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3.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
-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안 제19조중 “활동비(여비 등)”을 “수당 및 여비”로 한다.

7. 심사 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2. 22.
제 안 자 : 이대원 의원외

□ 수정 이유

-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조문 이해의 용이성, 명확성을 기하여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“도 실 · 국장”을 “도 실 · 본부 · 국장”으로 한다.
- 안 제17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3.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
-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안 제19조중 “활동비(여비 등)”을 “수당 및 여비”로 한다.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5조제4항제1호중 “도 실 · 국장”을 “도 실 · 본부 · 국장”으로 한다.
- 안 제17조제2항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3.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
- 안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안 제19조중 “활동비(여비 등)”을 “수당 및 여비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③(생략)</p> <p>④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도 실·국장</u>, 도 의회의원,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 2. (생략) <p>제17조(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) ①센터내에 기업관련 전의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 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(이하 “옴부 즈만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·군별 1명 씩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.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. <u>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</u> 4. 국가·지방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. 경제계·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도 실·본부·국장</u>, 도 의회의원, 시·군의 부시장·부군수 2. (현행과 같음) <p>제17조(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) ① ···</p> <p>.....</p> <p>②..... 1. 2. 3. <u>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</u> 4. 5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8조(기업에로자문위원회회의 구성 · 운영) ① ~ ④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18조(기업에로자문위원회회의 구성 · 구성) 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
<p>제19조(활동지원)) 옴부즈만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활동비(여비 등)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활동지원) <u>수당 및 여비</u>.....</p>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"이라 함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이달의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
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"제①항"을 "제1항"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③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"기업사랑 · 농촌사랑운동"을 적극 지원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기업사랑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"를 "기업사랑 · 농촌사랑운동본부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"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"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고 수시로 개최한다"를 "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"로 한다.

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도 실 · 본부 · 국장, 도 의회의원, 시 · 군의 부시장 · 부군수
2. 기업지원 유관기관 · 단체장

제16조를 제20조로 하며, 제16조 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6조(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· 운영)①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한다.

- ②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③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 지원
2.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 및 지원

제17조(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) ①센터내에 기업관련 건의사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옴부즈(이하 “옴부즈만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 · 군별 1명씩 시장 ·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
1.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
 2.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
 3.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
 4. 국가 · 지방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③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- ④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1.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 · 의견표명
 2. 기업경영상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사항 파악 등

제18조(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

- ① 옴부즈만의 공평한 직무수행과 전문 ·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업인 각계 전문가,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,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한다.
-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9조(활동지원) 옴부즈만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정부등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

제48조 (육성계획의 수립) ① 시 · 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 · 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

2.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 4.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 5.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 6.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
- ③ 시 · 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 ·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3. 농림 ·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
4.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5. (생략)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,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